

참고1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①홈택스 전자신청)

□ (신청방법) ①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① 홈택스 전자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증명·등록·신청' (Proof·Registration·Application) which is highlighted. Under this menu,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Tax-related application/reporting common areas) is selected. In the dropdown menu,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 by reporting category) is highlighted. Other options in the menu include '일반신청/결과조회',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and '송달장소 신고/변경'.

◆ 메뉴 경로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검색 키워드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

대상 신고서

※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세목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소득·법인·부가·소비·재산 <input type="radio"/> 원천세				
*분납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지납 <input type="radio"/> 분납	*세목	법인세	*과세기간 (신고대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고구분	징기(확정)	*신고서종류	법인세 일반징기확정(내국세,농)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15,000,000

신청사항

신청기한 및 신청 가능 사유 바로가기

*당초기한	2026-03-31	*연장사유	기타
*연장사유상세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작성예시) 중등상황 피해기업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고자 함</div>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연장 가능 기간 바로가기

※ 추가 입력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분납 차수	납부기한	납부세액(예시)	
		15,000,000 (1천만원 초과)	30,000,000 (2천만원 초과)
1	6.30.	10,000,000	15,000,000
2	중소기업 9.1. (중소기업 외 7.31.)	5,000,000	15,000,000

선택	분납차수	납부기한	신청금액		
			내국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2026-06-30	10,000,000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2026-09-01	5,000,000	0	0

참고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고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금액	
고지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